

종 류	국 유 재 산	공 유 재 산
○ 보존재산	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앞으로 5년내에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(보존임야, 문화재)	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(문화재등)
○ 잡종재산	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	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

5. 財産의 性質

가. 行政財産

행정재산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유물중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큰 재산이다. 행정재산은 공용·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매각, 교환, 양여, 대부, 출자, 사권설정, 신탁이 불가능한 재산(이상 국유재산법 제20조 지방재정법제82조)이다

[사 례] : 시유지인 행정재산에 컨벤션센터를 직접 건립코자 할 경우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당해 시유지를 담보물권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(2000. 8. 8 행정자치부 질의회신)

○ 행정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권설정이 금지된 재산이며,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대상이며 담보물권이 불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부지를 담보물권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됨

○ 또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잡종

재산인 상태에서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잡종재산의 사권설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사권설정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이 없고 더욱이 매각 전에 특정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을 뿐 아니라 자칫 특혜시비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자본투자자에게 담보물권으로 시유지 제공이 불가하다 할 것임.

다만,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현재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(예 : 군도→지방도, 지방하천→국유하천, 국립공원→도립공원등)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양여할 수 있으며 국가·다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상태에서 교환이 가능하다.(이상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, 제3호)

※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범위 확대 내용(2000. 10. 20 개정)